

문서번호 2018 - 238 호
 시행일자 2018. 07. 25.
 (경 유)
 수 신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

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선결 | | | 지시 | |
| 접 수 | 일자 시간 | | 결 재 · 공 람 | |
| | 번호 | | | |
| 처리과 | | | | |
| 담당자 | | | | |

참 조

제 목 : 동부간선도로 3공구 방음터널 기반시설 확인의 건.

1.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'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일원'에 설치한 동부간선도로 3공구 방음터널은 인접 주민들의 교통소음 및 자동차의 매연, 이물질 등 분진 날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.

3. 위 방음터널은 인접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며,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인바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'에 따라 기반시설로서 설치되었음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첨부 : 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.

2. 현장사진 1부. 끝.

다스코 주식회사

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-2

대표이사 한 상 원



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국토계획법 시행령)

[시행 2018.2.9.] [대통령령 제28628호, 2018.2.9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 - 개발행위) 044 - 201 - 3717, 3709
 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) 044 - 201 - 3708
 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 - 지구단위) 044 - 201 - 3709, 3714
 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 - 도시기본계획) 044 - 201 - 3711
 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 - 용도지역) 044 - 201 - 4720, 3708
 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 - 도시계획시설) 044 - 201 - 3710, 3716
 국토교통부 (도시정책과 - 토지적성) 044 - 201 - 3710, 3725
 국토교통부 (토지정책과 - 토지거래허가) 044 - 201 - 3407

제2조(기반시설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(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<개정

2005.9.8., 2008.5.26., 2009.11.2., 2013.6.11., 2016.2.11.>

1. 교통시설 :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·자동차정류장·궤도·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
2. 공간시설 : 광장·공원·녹지·유원지·공공공지
3. 유통·공급시설 :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·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·시장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
4. 공공·문화체육시설 : 학교·운동장·공공청사·문화시설·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·연구시설·사회복지시설·공공직업훈련시설·청소년수련시설
5. 방재시설 : 하천·유수지·저수지·방화설비·방풍설비·방수설비·사방설비·방조설비
6. 보건위생시설 : 화장시설·공동묘지·봉안시설·자연장지·장례식장·도축장·종합의료시설
7. 환경기초시설 :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·폐차장

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·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.8., 2010.4.29., 2016.5.17.>

1. 도로
 - 가. 일반도로
 - 나. 자동차전용도로
 - 다. 보행자전용도로
 - 라. 보행자우선도로
 - 마. 자전거전용도로
 - 바. 고가도로
 - 사. 지하도로
2. 자동차정류장
 - 가. 여객자동차터미널

- 나. 화물터미널
- 다. 공영차고지
- 라. 공동차고지
- 마. 화물자동차 휴게소
- 바. 복합환승센터

3. 광장

- 가. 교통광장
- 나. 일반광장
- 다. 경관광장
- 라. 지하광장
- 마. 건축물부설광장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